

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운영규정

(제정 2023. 12. 15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 「지방대학 활성화 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」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본 사업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운영기획
2. 지자체-대학 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원
3. 특성화를 위한 학과구조·학사제도 개편 지원
4.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지원
5. 지역 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 지원
6. 특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지원
7. 그 밖에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(조직) ①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는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이 된다.

② 본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수행한다.

제4조(인력)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성화 분야별 책임교수, 연구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위원회

제5조(사업추진위원회) ①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.

② 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대외부총장과 전라북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이 된다.

④ 교육혁신본부장, 교무처장, 학생취업처장, 입학처장, 기획처장, 총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부위원장이 추천하되 교외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⑥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 기본계획, 운영 방향 및 전략 수립
2. 사업 및 예산 조정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

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6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된다.

④ 교무부처장, 학생취업부처장, 교육과정평가센터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융합교육지원센터장, 대학성과관리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학생 1명, 교외위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⑥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.

1. 사업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지표향상 방안 및 사업 목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업평가에 관한 중요사항

⑦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7조(실무추진위원회) 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무추진위원회를 둔다.

② 실무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이 된다.

④ 교육혁신지원실장, 교무지원실장, 학사지원실장, 진로취업지원실장, 입학지원실장, 기획예산실장, 총무지원실장, 대학혁신지원사업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담당자 등 교외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⑥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사업 추진 현황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
3. 지역 대학 간 협력 및 사업성과 공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업 실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

⑦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사업의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의 효율적 실행 및 점검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「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규정」에 따라 설치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가 겸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핵심 및 자율성과지표 관리 및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
3. 사업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
4. 사업비 배분 및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
5. 사업의 확산, 협력 및 중복에 관한 사항
6. 관련 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

- 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4장 재정 및 사업관리

제9조(재정 및 회계) ① 사업 재정은 대학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, 본교 회계의 별도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.

② 사업 회계는 관계 법령, 「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」 및 본교 「재무 및 회계규정」을 따르며, 「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」을 준용한다.

제10조(자산취득) 사업으로 취득하는 기자재, 지식재산권, 유무형 결과물 등은 본교에 귀속된다.

제11조(수당 등 지급) ① 사업추진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, 실무추진위원회,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관계자, 재학생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특성화분야 책임교수에 대해서는 소정의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「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」을 따른다.

제12조(사업관리) 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관련 규정, 한국연구재단 관리 매뉴얼 등 상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<2023.12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정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의 종료 시점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수행한 사업 추진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